

프랑스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

- 2022년 「3DS법」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전 훈



프랑스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

- 2022년 「3DS법」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전 훈



CONTENTS

ISSUE
PAPER

요약문	4
-----	---

Chapter.

01	6
-----------	---

2022년 신(新)지방분권법 제정

1. 배경 상황	7
2. 법률 제정 과정	9
3. 신(新)지방분권법의 네 가지 축	10

Chapter.

02	14
-----------	----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 내용 분석

1. 개괄	15
2. 입법영향평가서 내용의 구체적 검토	16

Chapter.

03	30
-----------	----

시사점

참고문헌	32
------	----

프랑스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

- 2022년 「3DS법」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전 훈¹⁾

요약문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은 헌법 제1조와 지방자치에 관한 제12장을 통해 국가 운영의 기본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과 2022년에 재집권에 성공한 마크롱(E. Macron) 정부는 새로운 지방분권 정책을 2022년 제정된 「3DS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종래 프랑스 지방분권은 보충성원칙에 따라 지방과 중앙의 행정권한을 배분하고 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재정의 지원체계 구축에 비중을 두었고, 프랑스 특유의 복잡한 지방행정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결합체(l'intercommunalité)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마크롱 집권 초기 진행되다 실패한 개헌작업의 주요 내용이었던 새로운 지방분권화 정책은 2018년 유류세 파동에 따른 '노란조끼(Gillet Janue)'운동의 여파로 2019년 상반기 국민대토론회(Grand Débat National)를 통해 국가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다시 제시되었다.

본 이슈페이퍼는 2022년 2월 21일 법률 제2022-217호로 제정된 「차별화(différenciation), 분권화(décentralisation), 분산화(déconcentration)와 지역 공공활동의 다양한 조치의 간소화(Simplification)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률은 프랑스에서도 법률 연구실(Laboratoire des lois)로 비유되는 복잡한 법령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GCT)」의 총칙(기본원칙) 부분은 물론 지역에서의 공공 작용 전반에 걸친 분권화, 분산화, 차별화를 통해 균등하게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역할을 담은 총 27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새로운 지방분권과 그 실행 방식을 표방한 전체 내용을 망라하는 것보다는 지난 40년간 좌·우 정치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의 새로운 제4막(幕)의 기본 철학으로 국토 전체에 걸친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 새 법률의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을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본 이슈페이퍼는 마크롱 대통령 스스로 강조한 '신(新)지방분권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및 네 가지 축인 차별화, 분권화, 분산화, 간소화의 기본 내용을 소개하고, 상원(Sénat) 제출 당시 첨부되었던 입법영향평가서(Étude d'impact, NOR: TERB2105196L/Blue-1)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입법영향평가서는 법안 초안에 첨부되는 문서이다 보니 실제로 보고서 작성 이후 상·하원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전위헌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나타난 제정 법률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조문에 대한 영향평가서 검토 내용은 법률 도입의 상황에 대한 정황과 맥락의 검토에 이어 해당 입법의 필요성, 법률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고려 요소 및 입법 후 해당 조항이 법률·명령에 미치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규범평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normes)의 시간적·장소적 대상 범위에 관한 검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 시행과정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동 규정에 대한 후속 정비 작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 부분을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가독성을 고려하여 소개하였다.

Chapter



2022년 신(新)지방분권법 제정

1. 배경 상황	7
2. 법률 제정 과정	9
3. 신(新)지방분권법의 네 가지 축	10

2022년 신(新)지방분권법 제정

1. 배경 상황

- 프랑스 지방분권은 국내에서도 널리 소개된 바와 같이 마크롱 정부 이전까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우선 1982년-2003년 헌법개정까지를 제1기(제1막, Act 1)라 하고 이후 2010년까지를 제2기(제2막, Act 2), 2010년부터 2017년까지를 제3기(제3막, Act 3)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기의 경우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약 200개의 법령으로 보완된 25개의 주요 법률이 차례로 제정되었고, 1992년 2월 6일 「국가의 지방행정에 관한 법률」²⁾을 통해 지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지역분산(Déconcentration)을 강화하였다. 1995년 국토계획법³⁾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과 지역주민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1999년 7월 12일 제정된 일명 셔베느망(Chevènement)법⁴⁾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 이하 Commune으로 표기함)⁵⁾간 협력을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였다. 제2기는 2003년 프랑스 헌법개정과 후속 법률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프랑스 실정법과 문헌상 지방의 자유로운 행정) 강화를 위한 유기적 입법 작업이 진행되었다. 2003년 8월 1일 조직법률(헌법상 제도(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통상의 일반법률보다 엄격한 제정절차와 의무적인 사전위헌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제정된 실험법과 주민투표법 등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제3기는 정치적 색깔이 달랐지만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N. Sarkozy) 정권(2007~2012)하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개혁에 관한 법률」(2010)⁶⁾과 사회당 프랑스와 올랑드(F.

2) Loi du 6 février 1992 relative à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줄여서 ATR법이라고도 한다.

3) Loi n° 95-115 du 4 février 1995 d'orientation pour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4)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5) 2022년 1월 1일 현재 34,955개의 코뮌과 자율적인 조세 권한을 가진 1,254곳의 코뮌간협력체가 있다(<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collectivites-locales-chiffres-2023>).

6) Loi n°2010-1563 du 16 décembre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Hollande) 정권(2012-2017)이 추진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2015년 「NOTRe법」⁷⁾과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에 관한 관련 법률」등을 통해 지방행정의 현대화와 권한이양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에서의 형평성을 강조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 에마누엘 마크롱(E. Macron)대통령(2017-2022.4.24. 재당선)은 자신의 첫 임기 초기인 2017년 7월 선거 공약이었던 Conférence Nationale des Territoires(전국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방분권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통일성을 창조한 평등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토 전체에 걸쳐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⁸⁾

하지만, 정부 주도의 개혁안 작업이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반대로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Gillet jaune) 운동’⁹⁾의 여파로 사실상 중단되었고,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생태 전환(La transition écologique), 조세와 공공지출(La fiscalité et les dépenses publiques), 민주주의와 시민권(La démocratie et la citoyenneté), 국가조직과 공공서비스(L’organisation de l’Etat et des services publics) 분야를 중심으로 2개월간(2019년 1월 15일~3월 15일)의 국민 대토론회¹⁰⁾를 실시하였다.

-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분명한 사회적 요청에서 국가와 지방간 권한의 배분과 분권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7월 14일 국경일 담화에서 지방분권 영역에서의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어진 총리의 상·하원 연설을 통해 새로운 지방분권 입법작업을 천명하였다.

- 2020년 1월부터 정부는 각 레지옹 차원에서 선출직 대표자들과 협의회를 가지면서 이러한 지방분권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획기적 변화보다 지역에서의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나타난 근접성과 효율성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역,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적 활동과 구체적 조치의 실행의 역량 강화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2022년에 입법의 결실을 본 이른바 「3DS법」¹¹⁾은 지난 80년대 초반의 ‘개혁(改革)으로서의 지방분권’이라기 보다는 현재 프랑스가 처한 생태적 전환, 주거, 교통 및 보건과 사회적 연대와 같은 주요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처를 가능하게끔 하는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의

7) La loi n°2015-991 du 7 août 2015 portant sur la 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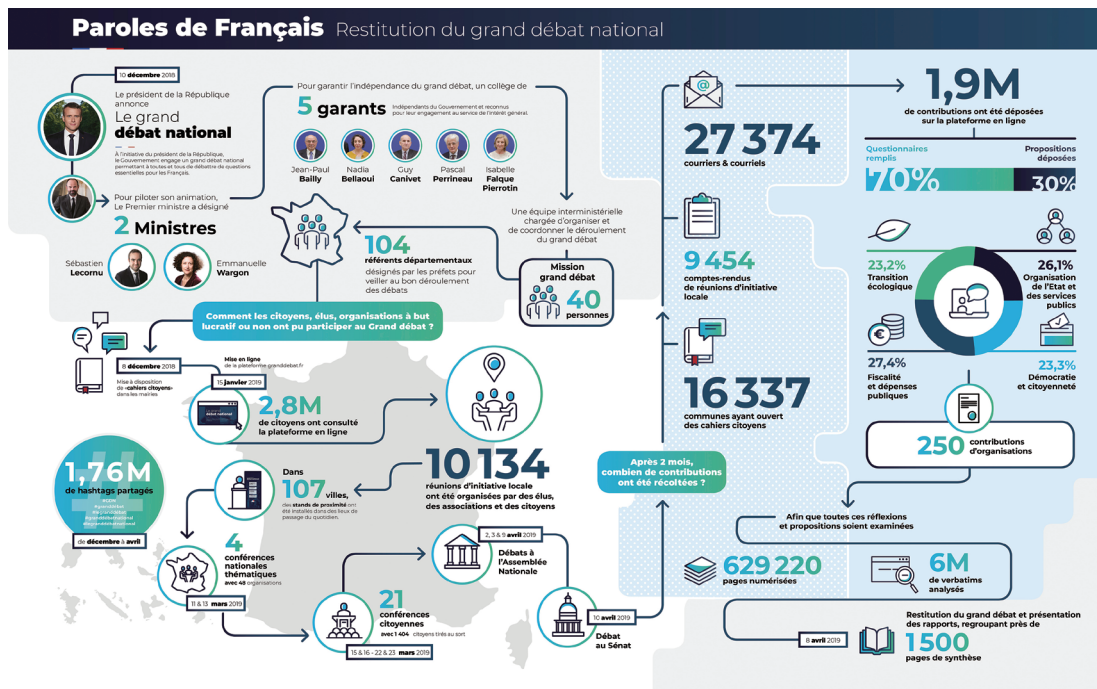
8) “l’égalité, qui crée l’uniformité, n’assure plus l’égalité des chances sur la totalité de notre territoires”.

9) 20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유류 소비세(TICPE)를 11.5%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일련의 증세 정책 발표에 대한 불만과 탈세 관련 스캔들로 11월 17일 전국적인 노란 조끼 시위대의 첫 시위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대확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란 조끼 운동의 가장 특징은 종전처럼 기성 노동조합이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참여 계층과 요구사항들이 나타났다는 점이다(온명근,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32~134쪽)

10) <https://www.gouvernement.fr/le-grand-debat-national> (검색 일자: 2023.2.15) 그림과 같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약 2개월간 진행된 국민토론회에 19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우편과 전자우편 등 27,374건이 접수되었으며,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 감면 등을 발표했다.

11) 차별화(différenciation), 분권화(décentralisation), 분산화(déconcentration)와 지역 공공활동의 다양한 조치의 간소화에 관한 2022년 2월 21일 법률 제2022-217호(Loi n°2022-217 du 21 février 2022 relative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ocale).

실현'에 대한 구체적 응답을 담은 법률'이라는 점에서 과연 새로운 지방분권법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2019년 Grand Débat National 개요

2. 법률 제정 과정

- 2019년 11월 19일 마크롱 대통령은 전국 기초단체장 연찬회에서 각 지역에 차별적인 새로운 지방분권의 막을 열 것임을 공언하였다. 마크롱은 지방분권이 권한의 배분에서의 효율성과 공적 활동의 가시성 논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2021년 5월 12일 상원에 제출된 정부의 법률안(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 틀의 변화를 의도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권한과 사무의 운영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는 지역별 차별화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이러한 지역에 맞는 차별화는 헌법상 원칙인 지방자치단체간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일정한 사무군(bloc des compétences)의 이양을 완수하는 분권의 새로운 단계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21년 5월 12일 상원에 제출된 정부 제출 법률안(Le projet de loi)은 2022년 2월 8일, 9일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6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제출 당시에는 84개 조항이었으나 양원 합동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법률 규정은 모두 27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출된 법률안은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으로 이해하는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간 배분과 재정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최근 글로벌 이슈인 국가 차원의 생태 전환, 도시계획과

주거, 보건, 사회통합에 더하여 교육에까지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공공 작용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는 행정의 개입 사항에 부응하는 특정 권한의 배분을 명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지방분권법이라는 세간의 명칭과 달리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별적이고 적응성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와 공공서비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령 규정의 정비에 비중을 두고 있다.

「3DS법」의 주요 목적은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역의 특수성에 맞는 예상되는 조치를 적응성 있게 조치할 수 있는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둘째,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출직) 지역대표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국가기관(일종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활동과 조의를 실행을 수월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체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의 통과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과정과 사전위헌심사 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동 법률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보건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신속 입법 절차를 거친 사정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전위헌심사 제청 없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3. 신(新)지방분권법의 네 가지 축

1) 차별화

- 차별화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특수성에 맞는 기다리던 조치를 적응성 있게 조치할 수 있는 필요한 유연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차별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데파르트망(Département)¹²⁾이나 레지옹(Région)¹³⁾에 필요한 법률안 제안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고 연례보고서를 통한 구체적 추진사항 확보

12) 다수의 Commune으로 구성된 중간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2023년 1월 현재 모두 101개가 있다. 유럽 대륙 본토에 9개(2개는 꼬르스), 해외(구 식민지)에 5개가 있다. 2015년 8월 7일 제정된 신지방조직법(일명「NOTRe법」, la loi du 7 août 2015 portant 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에서는 지역과 인적연대(solidarité territoriale et humaine)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로 사회복지 관련, 교육, 지역개발과 교통, 문화 등 다양하게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한 사무를 수행한다.

13) 수 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023년 1월 현재 유럽 대륙 본토에 12개, 해외(구 식민지)에 5개가 있다. 2015년 1월 16일 제정된 「레지옹의 구획과 데파르트망과 레지옹 지방선거 일정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新) 레지옹인 고르스(꼬르스 레지옹이라 하지 않고 Collectivité de Corse로 변경됨)와 5개의 해외 레지옹(Régions d'outre-mer, 줄여서 ROM이라 표기한다)가 있다.

(<https://www.vie-publique.fr/fiches/19628-quelle-est-la-nouvelle-carte-regionale-issue-de-la-loi-de-janvier-2015>, 검색 일자:2023년 3월 5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별 권한의 위임을 허용하여 이들 중 관련 이익을 가진 Commune이 선도하도록 함
-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제정권의 강화¹⁴⁾
- 주민청원(Pétition locale)¹⁵⁾ 기준 마련을 통해 지방의회나 Commune간협력체(EPCI)¹⁶⁾ 의결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여 참여민주주의 조치의 강화
- Commune간협력체 구성 과정에서 차별화 가능성
- Commune간협력체를 결성하면서 참여하는 Commune에 따라 임의적 사무를 차별적 이양
- 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와 메트로폴(Métropole)¹⁷⁾에 포함된 Commune과 Commune간협력체가 공동으로 Commune에 대하여 Commune 간 도로 관리사무를 위탁하도록 함
- 상·하수도 운영 사무 권한을 Commune간협력체에 이양하며, 이러한 방식은 협약을 통해 시행
- Commune간협력체를 주거관리 운영기관(Autorité organisatrice de l'habitat, AOH)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정책과 지방세제 개정에 참여하도록 함
- Aix-Marseille-Provence 메트로폴(Métropole)에 대한 조직 변경
- 기존의 의결기관인 les conseils de territoriales를 폐지
- 지역 밀착형 사무는 다시 메트로폴(Métropole)에 참여한 Commune으로 환원함
- 지역회계원(Cour des comptes régionales, CCR)¹⁸⁾의 객관적 의견서에 기초하여 메트로폴(Métropole)과 소속 Commune 사이의 재정 관계를 재검토
- 국경 간 협력 강화와 일상적 불편 사항의 개선
-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대상 국가는 주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공기업 설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 보장
- 외국기업의 학습 주기의 현실을 법적으로 안정화
- 접경지 데파르트망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외국 국적 선수들에게 해당 국가 주거지에서 한 의료(도핑) 관련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

2) 분권화

- 이른바 「3DS법」에서 강조하는 분권화는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민주주의로 결과로 구성된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지역 내 국도 관리에 대한 대폭적 지방이양을 통해 총연장 1만 킬로가 넘는 국도가 해당

14)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논의하는 비선점(非先占) 영역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인정과 비교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제정 권한에 관해 제72조제6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

15) 프랑스 문헌에서 주민투표는 Référendum local이라고 local이란 수식어를 붙이지만, 주민청원으로 이해되는 Pétition에서는 local을 붙이지 않지만, 의역해서 주민청원으로 적기로 한다.

16) EPCI(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는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목적이나 기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Commune간의 협력체 법인이다.

17) 새롭게 만든 Commune간협력체로서 현재 21개가 설치되어 있다. 메트로폴은 2010년 12월 10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개혁법」(Loi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줄여서 「RCT법」이라고도 한다)을 통해 2012년 1월 1일에 la métropole Nice-Côte d'Azur 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2014년 1월 27일 제정된 「메트로폴의 승인과 지역 공공정책의 현대화 법률」(Loi du 27 janvier 2014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territoriale et d'affirmation des métropoles, 줄여서 MAPTAM법이라 한다)에서 그 내용이 전면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8) 우리나라의 감사원(회계법원, Cour des comptes)에 해당하는 회계원을 레지옹 단위로 두고 있다. 프랑스는 이원적 재판제도를 가진 나라이고 회계 사항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원을 두어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방도(데파르트망, 메트로폴, 레지옹의 경우 실험법에 따라)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에 따라 보건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데파르트망의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에 관한 권한의 확대와 분산화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 지역에서의 생태 전환의 성공을 가져오도록 함
-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주거 제공의 발전
- 국토개발의 활성화와 가속화
- 해당 구역 안의 무주(無主)재산과 버려진 주택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통해 개발과 개축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 활성화 조치를 통해 외곽지역의 변화를 쉽게 하여 바캉스와 디지털 상거래에 대응한 지원과 기반 시설을 재정비함
- 대중교통 수단의 현대화
- 철도 운송
- 레지옹 차원에서 설치된 지역보건협의체(Agences régionales de santé, ARS)¹⁹⁾의 운영위원회를 레지옹 프레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의 3/4을 지역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들 운영위원회는 보건상 긴급상황 기간 동안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지역보건협의체(ARS)는 의료 공동화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안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 지역보건협의체(ARS) 데파르트망 지부장은 매년 활동보고서를 레지옹의 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역 내 사회통합의 강화
- 해당 데파르트망의 신청에 따라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저소득 극빈자에 대한 지원수당) 비용부담을 국가로 이관하는 실험 조치 시행을 통해 데파르트망은 수급자의 파악과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
- 데파르트망을 향후 노령자 주민의 포괄적인 맞춤형 주거 방식의 선도 주체로 하며, 포괄적 주거를 건축 및 주거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t de l'habitation) L.302-1 내지 302-4-1에서 규정하는 지역거주계획(Le programme local de l'habitat, PLH)에 반영
 -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지방의 역량을 강화함

3) 분산화

- 행정분산은 지방분권과는 달리 동일한 법주체 내부에서의 행정권한의 배분 방식이다. 오디롱 바로(O. Barrot)는 “때리는 망치는 똑같은데 손잡이 길이가 손에 맞게 조절된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지만²⁰⁾ 동일한 법주체(국가)의 행정업무의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에 분산된 지방행정청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보면 권한의 재배분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행정분산은 지방에서의 국가의 활동을 지원과 관련된다.

19) 생태·산업 연구개발 등 부처 간 공동으로 ADEME(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Energie/ Agency for Environment and Energy Management)이라는 기구를 1991년 설립하여 에너지-환경 부문의 장기비전과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교육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다. Agence는 영어 Agency에 해당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행정영조물(법인, un établissement public administratif de l'État)이다. 「공중보건법(Code de Santé publique)」 Titre III du livre IV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 4월 1일에 설치되었다.(사전에서 제공하는 지점, 대리점, 출장소 등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서 해당 용어와 같이 의역하였다)

20) P. Serrand, Manuel d'institution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5^e édition mise à jour, PUF, 2015, p.113.

- 프레페(Préfet, 전국에 파견된 일반지방행정관청)는 ADEME²¹⁾과 생물다양성청(Office français de la biodiversité)의 지역대표기관²²⁾의 지위에서 국가와 소속 연구 기술 인력 활동의 통합성을 보장함
- 유역물관리청장(Préfet de bassin)은 유역관리위원회의 이사회를 대표하고, 각 데파르트망의 프레페는 정기적으로 유역관리청에 참석하여 국가 및 해당 데파르트망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계획안에 참여함

4) 간소화

- 지방에서의 공공활동의 간소화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에 알려주시오(dites-le nous une fois)”를 의미한다. 얼핏 보면 우리의 ‘원스톱 서비스’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규제 완화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서 공공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3DS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해당 조치의 투명성을 보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의 공유와 공표(公表)와 Commune이 추진하는 주민들의 기본 주소망 구축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고 있다.

- Commune 차원의 국가 기본주소 구축작업을 실시하여 광속망 연결이나 배달 등 공공서비스나 민간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소방이나 의료 구조를 위한 각 주거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함
- 데파르트망, 레지옹, Commune간협력체 의결기관의 회의 진행 방식에 있어 화상 비대면 회의 운영
- 지방공기업(Entreprise publique locale)의 투명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대표 선출직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 데파르트망, 레지옹 및 메트로폴(Métropole) 공공정책 감사와 기본투자계획안에 대한 지역회계원(Chambre régional des comptes, CRC)의 심사
- 각종 단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후원(mécénat)의 실험

21) 프랑스 2개 중앙부처(생태 전환 및 지역통합부 및 에너지 전환 및 고등교육과 연구부)의 행정상 후견 감독을 받는 상공업적 성격의 영조물이다.

22) 이때는 우리의 특별 지방행정관청으로서의 의미에 가깝다.

Chapter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 내용 분석

1. 개괄	15
2. 입법영향평가서 내용의 구체적 검토	16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 내용 분석

- 상원에 제출되었던 법률안 입법영향평가서 검토 내용이 법률 내용에 전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률의 제정 목적이라 할 주요 사항인 차별화, 자치입법권의 강화, 주민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률안 초안의 첫번째 Titre의 4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 내용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 개괄

- 상원(Sénat)에 안건 신속 절차(procédure accélérée)로 제출된 정부 법률안 제588호는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Commune에 방점이 주어져 있음)의 역할과 지역의 선출 대표자들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역에서의 공공정책의 근접성과 통일성을 다시 회복하는 분산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개선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 현행 법률은 271개 조문의 방대한 양(관보 면수만 101쪽)이지만, 상원에 처음 제출된 정부 법률안 초안은 8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초안은 모두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 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 첫 번째 Titre은 지방분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지역별 차별화에 관해 차별화에 대한 정의(제1조), 자치입법권의 강화(제2조), 공공 작용의 지역간 협의(제3조) 및 주민참여 조치의 확대(제4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Titre		
1	지역별 차별화 ²³⁾	제1조 차별화의 정의
		제2조 자치입법권의 강화
		제3조 공공 작용의 지역 간 협의
		제4조 주민참여 조치의 확대
2	생태적 전환	
3	도시계획과 주거	
4	보건, 사회통합, 교육 및 문화	
5	예산과 제출 법률안 규정 전반에 공통사항	
6	분산화 조치	
7	공공활동의 간소화 조치	
8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9	“Haras national du Pin” ²⁴⁾ 폐지에 관한 규정	

2. 입법영향평가서 내용의 구체적 검토²⁵⁾

1) 제1조: 차별화의 정의(Définition de la différenciation)

- 입법영향평가 대상 법률안 초안 제1조는 헌법이 허용하는 차별화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그리고 입법영향평가서상의 법률안 초안 제1조는 최종 공포된 법률 제1조와 동일한데, 「지방자치법(CGCT)」²⁶⁾ 내용을 변경하고, 제1111-3조 다음에 제1111-3-1조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프랑스 헌법 제72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어떠한 후견도 없음(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²⁷⁾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주요 목적인 실질적 지방분권으로서 차별화 규정이 가져올 지방자치단체간의 평등원칙에 대한 위헌 논쟁을 예방하고 법률에서 직접 차별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23) 법률안 초안은 표와 같이 총 4개 조문이지만 22년 2월 22일 공포된 최종 법률에서는 총 24개 조문으로 대폭 늘어났다.

24) 프랑스 남노르망디 레지옹(Orne Département 의 Pin-au-Haras Commune)에 있는 국립 종마원(種馬院)을 일컫는 명칭으로 1665년 루이 14세 시절에 왕실 종마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다. 2015년 7월 2일 데크레(décret)에 의해 국가행정영조물(Etablissement public administratif)로 설치되었으나 INR(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의 재정적 지원의 중단됨에 따라 이에 관한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5) 법률 초안 제3조의 내용은 실제로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법 L 1111-9-1조에 IX 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조항은 지역에서의 공공사업이나 정책 실행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나 Commune간협력체가 관여할 경우에 관련 사무 권한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6) Code général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CGCT), 직역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이나 이해와 가독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다른 Code와 마찬가지로 법률(일반법률은 L, 조직법률은 LO로 표기함)과 명령 규정 등이 체계에 맞게 규정되어 있다.

27)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가 제공하는 프랑스 헌법 번역문의 표현이다.

됨으로써 입법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 제2022-217호 제1조]²⁸⁾

4° Après l'article L. 1111-3, il est inséré un article L. 1111-3-1 ainsi rédigé :

“Art. L. 1111-3-1.-Dans le respect du principe d'égalité, les règles relatives à l'attribution et à l'exercice des compétences applicables à une catégorie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euvent être différenciées pour tenir compte des différences objectives de situations dans lesquelles se trouven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relevant de la même catégorie, pourvu que la différence de traitement qui en résulte soit proportionnée et en rapport avec l'objet de la loi qui l'établit. ”

(지방자치법) L.1111-3조 다음에 L.1111-3-1조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L.1111-3-1조-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권한의 부여와 그 권한의 실행에 관련된 규정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동일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처한 객관적인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조치가 법률이 정하는 목적에 비례하도록 하기위해 차별화 될 수 있다.” (일부분 의역(意譯)하였음)

(1) 상황

①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차별화된 권한과 사무처리의 인정

● 평등원칙(le principe d'égalité)은 프랑스 헌법재판의 심사기준(bloc de constitutionnalité)인 1789년 인권선언 제6조²⁹⁾와 1946년 헌법 전문 및 현행 헌법 제1조가 이를 천명하고 있으며, 1973년 12월 27일 '인정(認定)과세(Taxation d'office)결정' 이래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왔다.

● 신(新)지방분권법의 법명에서 차별화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의 잣대인 법률 앞의 평등원칙 위반 논란을 비껴가기 위함에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종래 프랑스 헌법재판소도 상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차별적 방법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실행과정에서 일정한 차별화를 법률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조치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행정재판과 정부의 법제 사무를 총괄하는 국사원(Conseil d'Etat)도 2017년 12월 7일 의견서(avis n°393651)에서 “동일한 유형(카테고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차별화와 이들 사무의 집행에 관해, 헌법 차원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하여 반드시 통일된 동일한 규율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 따라서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같은 Commune·Département·Région)에서 권한의 차별화와 이들 사이의 사무처리에 적용되는 규범의 차별화는 그 차별 방법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황이나

28) 「차별화, 분권화, 분산화와 지역공공활동의 다양한 조치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 관보 2022년 2월 22일, (https://www.legifrance.gouv.fr/download/pdf?id=xTFpZINhOc-g2Eq_jCfW3-1pWrS6r3xINiOT8Bw0saA=)

29) Conseil constitutionnel, n°73-51 Dc du 27 décembre 1973.

달성하려는 정책의 목적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익적 이유로 이를 정당화되는 경우라 한다면, 앞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입법자는 같은 카테고리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차별화된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사무의 실행의 차별화된 방법을 법률로 제정할 수 있게 된다.

② 권한이양과 실험법

- 법률안 초안은 실험법 방식³⁰⁾에 따라 법률로 새로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인³¹⁾ 알자스유럽지역체(의역임, Collectivité européenne d'Alsace)의 권한에 관한 2019년 8월 2일 법률에 따라 종래 Bas-Rhin(라인남부) 데파르트망과 Haut-Rhin(라인북부) 데파르트망이 관리했던 국도의 이용 및 관리사무를 두 데파르트망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알자스유럽지역체로 이양하도록 하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권한이양 조치를 법률에 담은 것은 종래부터 제기되어 왔었던 라인강 인근 전답(田畝)의 도로 운송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민원과 알자스(Alsace)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③ 지방사무의 집행에 적용되는 규범의 차별화

- 이미 2000년 12월 13일 제정된 「도시재생과 연대에 관한 법률」³²⁾(일명 SRU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리적 및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른 Commune에 비해 도시화 되지 않거나 고립된 Commune과 초미니 Commune에 대해 최소 20%의 사회적 주거 마련(임차인의 소득이 어렵거나 평균 이하의 경우 HLM(저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해결안으로 하고 있다)의 면제를 규정하였다.
- 지방사무의 실행 규정과 관련해 헌법 제72조제4항에 근거한 「실험의 간소화에 관한 2021년 4월 19일 조직법률」³³⁾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화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30) 프랑스 헌법 제7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험법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요건 또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조직법률,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그 권한 실행에 대한 법률이나 명령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organique, et sauf lorsque sont en cause les conditions essentielles d'exercice d'une liberté publique ou d'un droit constitutionnellement garanti,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leurs groupements peuvent, lorsque, selon le cas, la loi ou le règlement l'a prévu, déroger, à titre expérimental et pour un objet et une durée limités,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qui régissent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

31) 프랑스 헌법 제72조제1항은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문은 종전부터 존재했던 3계층의 Commune-데파르트망-레지옹,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공공단체 및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해외 자치단체(종전의 해외령)에 대해 규정한다(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sont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les 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et les collectivités d'outre-mer régies par l'article 74). 그리고 제2문에서는 “필요에 따라 본 항에 명시된 하나 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체하는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한다(Toute autre collectivité territoriale est créée par la loi, le cas échéant en lieu et place d'une ou de plusieurs collectivités mentionnées au présent alinéa)”고 규정한다.

32) Loi n°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 이 법은 프랑스 도시계획과 도시의 사회적 주거에 관한 대변화를 가져온 법률로 평가되며, 사회적 연대와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분권과 지방민주주의(각종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절차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33) Loi organique du 19 avril 2021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es expérimentations.

실험이 종료된 후에 평등원칙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의 실행에 관련해 기존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지역통합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부³⁴⁾ 장관이 주도한 본 법률안 협의 과정에서 지방의회 대표자들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해 특정한 분야에서의 국가법령에 대한 변경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통일적인 국가 규범은 최근 수년간 의회나 시민들이 표명했던 공공활동의 근접성과 효율성의 요청을 항상 충족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요청은 특히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다양성과 자신들의 요구에 특징을 고려한 공공정책을 기대하고 있고 지역대표자들은 국민대토론회 과정에서 지방의 특수성에 맞도록 혁신적이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국가 규범을 변경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지방사무의 배분과 관련해 다양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 법률 자체에 지방의 현실에 관한 법적 변경에 관한 원칙 자체를 마련해 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앞서 헌법재판소나 국사원³⁵⁾의견서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헌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권한과 재원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입법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권한의 부여의 차별화를 인정하는 것 또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정부 법률안(초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차별화 원칙을 위한 답을 내리는 시의성을 가진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추구해야 할 목표와 고려사항

① 목표

- 무엇보다도 법률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의 최대한의 효율성을 찾는 것이다. 법적 차원에서 분명하고 안정성을 가진 지역의 의사를 좇아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권한사항을 제정함에 있다.

② 고려사항

-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명시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부여와 권한의 실행에서의 차별화에 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34) Ministère des Cohesion des territoires et des relations avec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해당 부처는 2022.11. 마크롱 정부 제2기에서는 내무부와 생태전환국토통합부로 개편되었다.

35) 2017년 12월 7일 의견 제393651호는 동일 지방자치 유형(카테고리)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차별화와 권한 실행에 관한 것이었고, 2019년 2월 21일 의견 제396789호는 알자스유럽지역체(Collectivité européenne d'Alsace)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4) 검토조항의 영향 분석

① 분석 대상 조항³⁶⁾

Le chapitre 1^{er} du titre unique du livre 1^{er} de la première partie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st ainsi modifié :

1° Il est inséré une section 1 intitulée :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et exercice différencié des compétences” composée des articles L. 1111-1 à L. 1111-7 ;

2° Il est inséré une section 2 intitulée : “Section 2 : Délégations de compétences composée des articles L. 1111-8 à L. 1111-8-2 ;

3° Il est inséré une section 3 intitulée : “Section 3 : Exercice concerté des compétences” composée des articles L. 1111-9 à L. 1111-11 ;

4° Après l'article L. 1111-3, il est inséré un article L. 1111-3-1 ainsi rédigé :

“Art. L. 1111-3-1. - Les règles relatives à l'attribution des compétences et à leur exercice applicables à une catégorie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euvent être différenciées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égalité.”

지방자치법 첫 번째 Partie-단일 Livre-첫 번째 Chapitre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법률조항(L.) 제1111-1조 내지 제1111-7조를 포함하는 “Section 1: 일반규정과 권한의 차별화된 시행”을 추가한다.

2° 법률조항(L.) 제1111-8조 내지 제1111-8-2조를 포함하는 “Section 2: 권한의 위임”을 추가한다.

3° 법률조항(L.) 제1111-9조 내지 제1111-11조를 포함하는 “Section 3: 권한의 협력적 실행”을 추가한다.

4° 법률조항(L.) 1111-3-1조 다음에 법률조항(L.) 제1111-3-1조를 추가하며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부여와 실행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은 평등원칙을 준수하는 한 차별화될 수 있다.”

② 법률에 대한 영향

- 법률안 제1조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1부 제1책(Première Partie- LivrePremier)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유로운 행정(la libre administration)”에 관한 제1장(Chapitre 1)부분은 다음 두 가지의 변경이 있다.

첫째, L.1111-1 내지 L.1111-11조를 통해 3개 절(Section)로 구분하고 일반 규정(총론적 사항)과 권한의 차별화된 시행, 권한의 위임, 권한의 협력적 실행에 관해 규정한다. 둘째, 첫 번째 절에 다시 L.1111-3-1조를 두어 동 법률에서 헌법상 원칙인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대상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부여와 실행에 관한 기존법률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36) 앞의 2022년 2월 22일 법률 제1조와 비교해보면 1° 내지 3°까지는 내용이 같고 4°의 경우 초안에 비해 법률 규정이 더 구체화되었다.

③ 입법영향평가와 시행

-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L)제1212-2조에 따라 대상 조항은 규범평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normes)의 영향평가 검토 대상이 된다.

(ㄱ) 시간적 범위

- 평가 조항은 프랑스 관보 출간 다음 날부터 적용될 것이다.

(ㄴ) 장소적 범위

- 본 조치는 프랑스 영토 전체에 걸쳐 적용될 것이며 헌법 제73조에서 정한 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d'outre-mer)과 헌법 제74조의 해외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d'outre-mer) 및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지방 정부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통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차별화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제2조: 자치입법권의 확대(Extension du pouvoir réglementaire local)

- 법률안 초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된 권한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자치입법권 행사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Commune이나 Commune간협력체 위원회의 구성원 수의 결정, 방목 금지 비대상지역 명단의 공고 기간 및 방목이 허용되는 가축 수, 지역 내 공사를 위한 점용료 부과 등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상황

①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명령 제정권)

- 헌법 제72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요건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 제정권을 가진다. 첫째, 입법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경우와 실행 요건을 정할 수 있다. 둘째, 자치입법권 행사는 국가입법(총리의 명령제정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총리가 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만일 법률에서 어떠한 집행명령(데크레)에 관해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권한의 실행을 정하는 규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국가입법의 적용을 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21조와 제72조에 반할 수 있다.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명령 제정권은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필수적 요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고,³⁷⁾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없지만 평등원칙으로 나오는 한계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ommune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에서 다양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가 제기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는 2002년 1월 17일 「코르스(Corse)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전위헌법률심판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제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입법(le pouvoir réglementaire national)에 관한 헌법 제13조와 제21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역하면 자치행정)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제2항을 제시하였다.

2003년 3월 28일 국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예에 따라 현행 헌법 제72조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 자신의 권한을 실행하기 위하여 명령제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사항에 대한 명령 제정권에 대해 인정하 바 있는데³⁸⁾ 코르스 레지옹의 상사회 회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지방의회 내부 규정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지방의회의 명령 제정권을 인정한 바 있다.

- 국사원 역시 일찍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사무 조직에 관련된 직무명령에 관한 고시³⁹⁾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⁴⁰⁾을 가진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국사원은 전원합의체 의견(2012년 11월 15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제정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실행되며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이중적 제한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2015년 신(新)지방조직법(「NOTRe법」)은 레지옹에 대해 특정 레지옹 또는 전체 레지옹의 권한,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입안 과정에서 있는 법률이나 명령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에 관한 제안권(un pouvoir de proposition)을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CGCT)」제42221-1조 제4항과 제5항). 하지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데파르트망이나 레지옹에서 명령 제정권의 적극적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는데, 주로 Commune 차원에서 도시계획, 자치경찰 분야에서 자치 규범 제정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법률 제정의 필요성

- 프랑스 헌법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 제정권의 인정은 입법자의 몫이며, 국사원도 2012년 11월 15일 의견서에서 법률의 집행 임무를 가진 정부가 법률의 시행에 요청되는 불가결한 추가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분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37) Conseil constitutionnel, 18 janvier 1985, N°84-185; 17 janvier 2002 N°2001-454.

38) Conseil constitutionnel, 14 janvier 1999, N°98-407.

39) Conseil d'Etat, 9 juillet 1965, Pouzenc, N°58778, 58779.

40) Conseil d'Etat, 3/5 SSR, 6 novembre 1998, N°171317.

지난 2003년 헌법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3) 추구해야 할 목표와 고려사항

① 목표

- 헌법재판소와 국사원 판례에 나타난 헌법상 취지를 존중하면서 지역에서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초안 법률조항은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개진했던 “각 지역에 부합한 새로운 지방분권의 장”의 시작과 각 지역 마다 가장 그 지역의 요청에 근접하고 가시적인 공공활동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고려사항

- 법률안 초안 준비과정에서 각 레지옹과 데파르트망 프레페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무의 방식과 지역에서의 수행에 관한 토론회(2002)를 통해 토지개발계획 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간 관계의 변경이 집중적으로 건의되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공공정책의 변경의 필요성을 실험하고 있다. 특히 국가 규범(법률 또는 명령)의 적용 배제 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실험은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을 더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한 효율성을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지방의원에게 자신의 구역 상황에 부합하는 지역적 해결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자치입법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검토 규정

- 법률안에서 검토하는 대상 규정은 지역의 협의 차원에서 다양한 권한의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관한 것인데, Commune의 사회복지시설(Centres communaux et intercommunaux d'action social, CCAS와 CIAS)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의 수의 결정, 산림관리소(Office national des forêts, ONF)⁴¹⁾에 통보한 사무처리 기간 등에서 단체장의 권한, 공유재산의 임시 사용에 관한 점용료 결정에서의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개별 법령 조항의 개정을 대상으로 한다.

41) 농업식품부와 생태전환과 연대부의 감독을 받는 상공업적 영조물(l'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로서 산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1966년에 설립되었다. 프랑스 산림의 25%를 관리한다(https://fr.wikipedia.org/wiki/Office_national_des_for%C3%AAts).

(4) 검토조항의 영향 분석

① 분석 대상 조항⁴²⁾

Article 2

I. - Le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L. 123-6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est complété par les mots : “, leur nombre est fixé par délibération du conseil de la collectivité ou de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가족복지법」L.123-6조제5항에 다음 문구로 마무리한다:“그 수는 지방자치단체나 Commune간협력체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II. - A la deuxièm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241-11 du code forestier, les mots : “dans un délai fixé par décre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ans un délai compatible avec la communication par l'Office.”

「산림법」L.241-11조 제1항 제2문의 “데크레가 정한 기간 내에” 부분은 “산림관리소(Office, 위의 ONF를 말함)와의 협의를 통해 양립하는 기간 내에”로 변경한다.

III. - L'article L. 2333-84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st ainsi modifié :

1° Au premier alinéa, les mots : “ainsi que pour les occupations provisoires de leur domaine public par les chantiers de travaux” sont supprimés ;

2° Après le premier alinéa,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Le régime des redevances dues aux communes pour l'occupation provisoire de leur domaine public par les chantiers de travaux est fixé par délibération du conseil municipal.”

「지방자치법(CGCT)」제2333-84⁴³⁾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에서 “공사(工事)를 위한 Commune의 공유재산의 임시 점유와 같은” 부분을 삭제한다.

2° 제1항 다음에 다음 항을 신설한다: “Commune이 부과하는 공사 현장의 임시점용료 부과는 Commune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법률에 대한 영향

- 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정은 다음 다양한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제정권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 및 가족복지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L.123-6조 「산림법(Code forestier)」L.241-11 및 「지방자치법(CGCT)」L.2333-84조를 개정과 관련된다.

42) 법률안 초안 제2조는 22년 2월 22일 법률 제6조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초안의 내용에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더 추가되었다.

43) 해당 조항은 전기, 가스, 공동구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Commune)의 공유재산을 일시 점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

- 상기 신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 분야에서 각 법률의 실행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지역 상황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입법영향평가와 시행

- 「지방자치법(CGCT)」L.1212-2조에 따라 대상 조항은 규범평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normes)의 자문 대상이 된다.

(ㄱ) 시간적 범위

- 평가 조항은 프랑스 관보 출간 다음 날부터 적용될 것이다.

(ㄴ) 장소적 적용 범위

- 본 조치는 헌법 제74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뉴-칼레도니아 지역을 제외한 프랑스 국토 전체에 적용될 것이다.

3) 제4조: 주민참여 조치의 확대

(1) 상황

① 유권자 자문제도와 주민투표와의 구별

- 프랑스 헌법 제72조의 1 제1항에 따르면 주민청원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을 의회의 의안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주민청원권은 지방자치법에 유권자 자문에 관한 내용에 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지역에서의 유권자 자문(la consultation locale des électeurs)(이하 ‘지역 유권자 자문’이라 함)은 1992년 「ATR법」 제10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인 Commune에 대해서만 상세히 규정하였다.

② 기타 참여민주주의 조치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절차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CRPA)⁴⁴⁾」L. 131-1조는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44)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우리의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등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경우를 제외하고, 개혁안의 수립 또는 어떤 계획안 수립이나 결정에 공중참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참여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표하고 필요한 정보를 관련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며, 공중참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L. 120-1조에 반영된 환경에 영향을 가져오는 계획안에 대한 지역 유권자 자문에 관한 2016년 4월 21일 오르도낭스 제2016-488호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가능성을 추가하였다. 다만 이를 주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이다.

- 「지방자치법(CGCT)」에서도 새로운 Commune의 설치안에 있어 관련 Commune의 유권자들에게 대한 유권자 자문을 실시한다. 만장일치로 새로운 Commune 설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주민 수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관련된 Commune 의회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CGCT)」 L.2113-2 내지 L. 2113-3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권한에 속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비선출 주민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똑같이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CGCT)」L. 2143-2조 및 L. 5211-49-1조).
- 기타 참여 형식으로는 우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유사한 참여예산(budgets participatifs)이나 특정 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자문(consultations en ligne)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헌법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는 지난 2003년 헌법개정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 현행 헌법 제72조의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들이, 주민청원권의 실행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신의 권한에 속한 문제를 의결기관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법의 필요성과 추구 목표

① 입법의 필요성

- 국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유권자 자문의 시행에 요구되는 주민 수(Commune의 경우 유권자의 5분의 1, 기타 자치단체는 10분의 1)의 문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권자 자문절차가 실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995년부터 2009년 동안 실시되었던 국가기관의 유권자 자문의 통계를 보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는데, 2008년과 2009년에 모두 17건이 진행되었고, 지난 15년 동안 실시되었던 유권자 자문은 총 233건에 불과하였다.
- 한편, 주민청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의결기관의 결정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자문의 시행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유권자 자문의 시행에 대한 신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72조의 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모든 사무에 대해 주민청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청원의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추구 목표

- 첫째, 주민청원권의 구체적 실행을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Commune과 Commune이 아닌 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주민청원권 행사에 필요한 유권자 수의 엄격함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5분의 1(Commune)과 10분의 1(데파트망과 레지옹)에서 10분의 1과 20분의 1로 변경하여 주민청원권 행사 실현을 가능케하는 유권자 서명의 확보를 보다 더 완화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주민청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한 모든 사무에 대해 청원이 가능하게 된다.

- 셋째, Commune 의회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의 사무처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 청원을 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은 행정법원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3) 가능한 선택과 검토 사항

① 검토 사항

- 청원권 실행의 확대를 위해 최소 주민 수를 대폭 낮추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청원자들의 대표적 성격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원 건수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서 종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또한 청원 신청 수리에 관한 Commune 의회나 다른 자치단체 의결기관의 사무처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선택지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행정법원의 제소 대상에 이러한 청원 신청 결과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원인들의 권리 보장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② 검토 결과

- 유권자 하한 수는 기초자치단체인 Commune과 그 외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기한 바와 같이 10분의 1과 20분의 1로 이전에 비해 반으로 완화되었다.
- 청원 사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모든 사무로 확대되었다.
- Commune 의회나 다른 자치단체 의결기관의 사무처는 향후 주민청원서 접수 수리 여부를 이유를 부기한 결정을 통해 밝혀야 하며, 동 결정은 행정법원의 제소 대상이 된다. 채택된 조항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자치에 관한 2004년 2월 27일 조직법률 제2004-192호」 제158조).

(4) 검토 대상 조항의 영향평가

① 분석 대상 조항⁴⁵⁾

Article 4
L'article L. 1112-16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remplacé par les dispositions suivantes :

“Dans une commune, un dixième des électeurs inscrits sur les listes électorales et, dans les autr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un vingtième des électeurs, peuvent demander à ce que soit inscrite à l'ordre du jour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de la collectivité l'organisation d'une consultation sur toute affaire relevant de la décision de cette assemblée. La pétition peut également avoir pour objet de saisir la collectivité de toute affaire relevant de sa compétence, pour l'inviter à délibérer dans un sens déterminé.”;

지방자치법 L. 1112-16조⁴⁶⁾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1항은 다음 규정으로 교체한다:
“Commune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1/10의 유권자 그리고 Commune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0의 유권자는 해당 의회의 의결에 속한 모든 사안에 대한 유권자 자문의 실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모든 사안을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기 위한 주민청원도 가능하다.”

2° Le dernier alinéa est remplacé par les dispositions suivantes :

“La pétition est adressée au maire ou au président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Le conseil municipal ou le bureau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se prononce sur la recevabilité de la pétition par une décision motivée, qui peut faire l'objet d'un recours devant le tribunal administratif. Lorsque la pétition est recevable, le maire ou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en fait rapport lors du plus prochain conseil municipal ou de la plus prochaine session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La décision d'organiser la consultation ou de délibérer sur l'affaire soumise par pétition appartient au conseil municipal ou à l'assemblée délibérante.”

2° 마지막 항(개정 전 제4항)은 다음 규정으로 교체한다:
“주민청원은 시장이나 (Commune 이외의 경우) 의회 의장에 대하여 한다. Commune 위원회나 의회 사무처는 주민청원서 접수를 수리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주민청원을 수리하는 경우, Commune의 장이나 의회의 장은 가장 가까운 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Commune의회나 (Commune 이외의) 의회는 의견수렴 구성이나 주민청원에 속하는 안건에 대해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

- 상기 표와 같이 「지방자치법(CGCT)」L.1112-116조 제1항과 마지막 항을 개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에 대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주민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45) 법률안 초안 제4조는 22년 2월 22일 법률 제14조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초안의 내용에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더 추가되었다.

46) 지방자치법 L.1112-15조 내지 L.1112-23조는 유권자 자문(Consultation des électeurs)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된 L. 1112-16조는 유권자 자문 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③ 주민 개인(particuliers)에 대한 영향

- 청원권의 실행에 필요한 요건이 완화되어 개인의 청원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④ 입법영향평가와 시행

- 지방자치법 L.1212-2조에 따라 대상 조항은 규범평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normes)의 자문 대상이 된다.

(ㄱ) 시간적 범위

- 평가 조항은 프랑스 관보 출간 다음 날부터 적용될 것이다.

(ㄴ) 장소적 적용 범위

- 본 조치는 프랑스 국토 전체에 적용될 것이다.

Chapter

3



시사점

-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체제 이후 60년간 지탱해 온 전통적 우파와 사회당의 정치권력 교체작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로 평가된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현 대통령은 국가적 가치로 승인된 지방분권의 새로운 목표로 지방의 새로운 활력과 사회적 유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 정부 당국 간의 신뢰 조건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취임 직후 추진했던 헌법개정 작업의 실패(노란 조끼 운동의 여파)와 COVID-19로 야기된 위기 속에서 2022년 2월 21일 제정된 새로운 지방분권 개혁 법률(「3DS법」)을 통해 공공(활동)에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호보완을 통한 국가 개혁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위한 네 번째 지방분권을 진행하고 있다.
- 차별화(Différenciation)-분권화(Décentralisation)-분산화(Déconcentration)와 공공활동의 간소화(Simplification)를 위한 새로운 법률은 다양성과 지역에 따른 특별한 요청에 대응하는 공공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맞춤형 차별 전략을 위한 법적 조치가 평등의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려면 지역의 상이한 상황의 차이에 대한 비례성 있는 차별화된 지방간 권한의 조정과 개입을 위한 규범상 차별화를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CGCT)」 총강 조항에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별화 조치”에 대한 신설 규정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평등원칙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지방분권과 평등원칙과의 갈등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동등한 취급을 합리화하는 범위에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평등의 내용인 자의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새로운 과감한 법률 규정은 실제로 현실화 정도에 있어서 미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프랑스에서 주민의 직접 참정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⁴⁷⁾

47) Laetitia JANICOT, La loi n°2022-217 du 21 février 2022 relative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ocale, une loi de circonstances, Droit administratif N°7, Juillet 2022, LexisNexis, p.14.



참고문헌

참고문헌

- 온명근,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32~134쪽.
- P. Serrand, Manuel d'institution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5^e édition mise à jour, PUF, 2015, p.113.
- Laetitia JANICOT, La loi n°2022-217 du 21 février 2022 relative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ocale, une loi de circonstances, Droit administratif N°7, Juillet 2022, LexisNexis, pp.13~18.
- Michel VERPEAUX · Laetitia JANICOT, Les institutions et les compétences, Revue Française Droit Administratif, N°3, Mai-Juin 2022, Dalloz, pp.397~410.
- https://www.legifrance.gouv.fr/download/pdf?id=xTFpZINhOc-g2Eq_jCfW3-1pWrS6r3xINI0T8Bw0saA=) 프랑스 관보(2022년 2월 22일)
- <https://www.senat.fr/leg/etudes-impact/pjl20-709-ei/pjl20-709-ei.html>, 신지방분권법안 부속 입법영향평가보고서(2021년 6월 23일 상원(Sénat) 제출)
- <https://www.vie-publique.fr/loi/279815-loi-3ds-decentralisation-deconcentration-collectivites-locales>(「3DS법」 내용 개요와 특징)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①

프랑스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

- 2022년 「3DS법」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을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프랑스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

- 2022년 「3DS법」 입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F. 044. 868. 9913

